

의안번호	2211136
의 퇴 인	문대림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2.
추 계 번호	25B3457

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억 3,000만원(연평균 3억 4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육성계획 수립 (안 제4조)	105	-	-	-	-	105	21
실태조사 (안 제5조)	325	325	325	325	325	1,625	325
합계	430	325	325	325	325	1,730	346

주: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함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거나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·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·재량 규정
3	안 제6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(이하 “특구”라 함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1.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2.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·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3. 반려동물용품의 기술 검증, 제품인증 및 실증시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일 것	재량규정
4	안 제7조(특구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	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8조(특구에 대한 평가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6	안 제9조(특구에 대한 지원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자의 기술개발,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1.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.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제품 등 인증시설 및 실증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.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·매각 및 사무용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여 또는 무상사용 4. 대통령령에 따른 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3항) 1. 반려동물식품, 반려동물용의약품,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(이하 “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”라 한다)의 생산·수집, 가공·분석, 공유·유통 촉진사업 2.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·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련된 사업 가. 관리·유통·거래체계 구축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나.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 다. 유통·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. 유통·활용에 대한 컨설팅	
7	안 제10조(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식품, 반려동물용의약품, 반려동물용품,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1.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 2.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.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4.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 및 연구·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8	안 제11조(벤처·창업 지원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·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함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1.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.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·제공 3. 반려동물식품,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(이하 “반려동물제품등”이라 한다)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. 반려동물제품등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. 창업에 필요한 법률, 세무,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·컨설팅 지원 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 재량규정
9	안 제1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반려동물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·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
10	안 제13조(전담기관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
11	안 제14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2	안 제15조(해외진출 촉진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·제공 2.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정보·기술·인력의 국제교류 3.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·참가 4. 그 밖에 반려동물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제품등을 해외에 홍보·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3	안 제1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)	○	• 유사사례 참고
2	안 제5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)	○	• 유사사례 참고
3	안 제6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신청·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,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·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7조(특구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		
5	안 제8조(특구에 대한 평가 등)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												
6	안 제9조(특구에 대한 지원 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 비용, 반려동물 연관제품 등 인증 시설 및 실증시설 사용료 감면, 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를 생성·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지원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지원 대상 특구 또는 반려동물연관사업자의 수, 지원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												
7	안 제10조(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 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,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·기술개발 및 정보교류·기술협력,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자·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예산</th></tr><tr><td>반려동물전주 기산업화기술 개발(R&D) (2280-426)</td><td>반려동물의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,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</td><td>4,501</td></tr><tr><td>반려동물전주 기고도화기술 개발(R&D) (1147-307)</td><td>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화 및 건강·질병 예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</td><td>4,010</td></tr><tr><td>One-welfare Valley 조성</td><td>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, R&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 산업화 활성화 등 지원</td><td>1,130</td></tr></table>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중 발체	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반려동물전주 기산업화기술 개발(R&D) (2280-426)	반려동물의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,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	4,501	반려동물전주 기고도화기술 개발(R&D) (1147-307)	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화 및 건강·질병 예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	4,010	One-welfare Valley 조성	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, R&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 산업화 활성화 등 지원	1,130
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												
반려동물전주 기산업화기술 개발(R&D) (2280-426)	반려동물의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,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	4,501													
반려동물전주 기고도화기술 개발(R&D) (1147-307)	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화 및 건강·질병 예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	4,010													
One-welfare Valley 조성	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, R&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 산업화 활성화 등 지원	1,130	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									
8	안 제11조(벤처·창업 지원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자금의 지원·용자, 창업을 위한 공간 임대·제공, 반려동물제품등의 실증·시제품 생산, 판로 확보 및 홍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·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벤처·창업 지원의 대상, 지원 내용·범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									
9	안 제1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반려동물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예산</th></tr><tr><td>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</td><td>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및 관리기관·시스템 운영 등 제도에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</td><td>680</td></tr><tr><td>동물보건의료인력 양성</td><td>동물보건의료 인력(수의사·동물보건사)의 자질 향상 및 면허·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</td><td>1,480</td></tr></table>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중 발채	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	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및 관리기관·시스템 운영 등 제도에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	680	동물보건의료인력 양성	동물보건의료 인력(수의사·동물보건사)의 자질 향상 및 면허·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	1,480
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									
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	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및 관리기관·시스템 운영 등 제도에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	680										
동물보건의료인력 양성	동물보건의료 인력(수의사·동물보건사)의 자질 향상 및 면허·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	1,480										
10	안 제13조(전담기관 지정 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,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									
11	안 제14조(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제정안은 종합시스템의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						
			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						
12	안 제15조(해외 진출 촉진 등)	-	• 미대상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[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]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예산</th></tr><tr><td>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(3471-347)</td><td>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지원</td><td>1,590</td></tr></table>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	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(3471-347)	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지원	1,590
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							
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(3471-347)	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지원	1,590							
13	안 제1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,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					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만원(연평균 2,100만원)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중 첫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연도	금액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'23~'27) 수립방안 연구	2022	110
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('24~'28) 수립 기초 연구	2023	100
평 균		10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	105	-	-	-	-	105	21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(안 제5조)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억 2,500만원(연평균 3억 2,500만원)으로 추계
 -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관련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실태조사	2025년 예산
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	200
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	450
평 균	32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5]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	325	325	325	325	325	1,625	325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·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